

「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 2026년 스마트도시 「알파-부스트」 지원사업 공고

AI⁺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「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의 2026년 스마트도시 「알파-부스트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9일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개요

- 지원목적 :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지원으로 기술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, 국내·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화 기업 육성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6. 6. 9. ~ 7. 8.(1개월)
- 지원대상 :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
- 지원분야 : 스마트인프라(AI 컴퓨팅, 데이터허브, 5G, IoT 등)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(로봇 / 모빌리티 / 지능형 관제 / 안전 서비스 및 솔루션 등)
- 지원규모 : 25건 내외, 지원기업 별 최대 66,000천원
- 지원내용 :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(상용화, 실증, 마케팅)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'알파-부스트(Alpha-Boost)' 패키지 지원

| 지원항목 | 지원금액 | 지원 건수 |
|--------|---|--------|
| 상용화 지원 | · 기업 당 최대 66,000천원 - 상용화 1건 : 22,000천원 - 실 증 1건 : 22,000천원 - 마케팅 1건 : 22,000천원 | 5건 내외 |
| 실증 지원 | | 20건 내외 |
| 마케팅 지원 | | |

※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, 지원항목 별 지원기업 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2 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(상용화, 실증, 마케팅)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‘알파-부스트(Alpha-Boost)’ 패키지 지원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--|---|
| 상용화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지원) 스마트도시 분야 멘토링 및 사업 모델 검증 지원, BM 수립 컨설팅 지원 등 · (R&D 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) 기술 로드맵 수립지원, 심층 기술 컨설팅 제공 · (프로토타입 제작 지원) 3D프린터 등 장비 이용 지원,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· (IP 컨설팅 및 출원 지원) 특허, 상표,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· (제품인증 지원) 국내·외 제품인증(CE, UL, KC, KS 등) 및 수수료, 시험비, 컨설팅 비용 등 |
| 실증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실증 인프라 지원)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(실증환경 구성에 필요한 기타비용) ※ 기업전용 5G망, 스타링크는 무상지원 예정 · (기술 협력 매칭) 특정 기술 문제 해결 또는 기술 융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타 기업, 대학, 연구소와의 매칭비용 지원 · (리빙랩연계 실증) 실증 리빙랩을 통한 사용자 피드백 지원 · (실증자문 지원) 도시, 안전분야 등 전문가의 실증 자문 제공 |
| 마케팅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) 타겟 시장(국내/해외) 동향, 경쟁사 분석, 기술 트렌드 등 맞춤형 시장 정보 제공 · (브랜딩 및 홍보 지원) 온·오프라인 제품/서비스 홍보물(국/영문) 제작 지원(브로셔, 리플렛, 홈페이지, 홍보영상 등), 언론 홍보,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지원 · (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)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국내·외 행사에 공동관 구성 또는 개별 참가 비용 지원 등 |

- ※ 컨설팅 및 자문 관련 등 보고서 형태의 단순 정보제공은 5,000천원 미만 내 지원
- ※ 상용화 지원은 패키지 지원만 가능
- ※ 실증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(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) 내에서 수행해야 함. 단, 부득이한 경우 심사 시 협의 가능)
- ※ 우수사례는 2027 WSCE(World Smart City Expo) 국제 전시회 공동관 지원 예정

○ 지원방법 및 확인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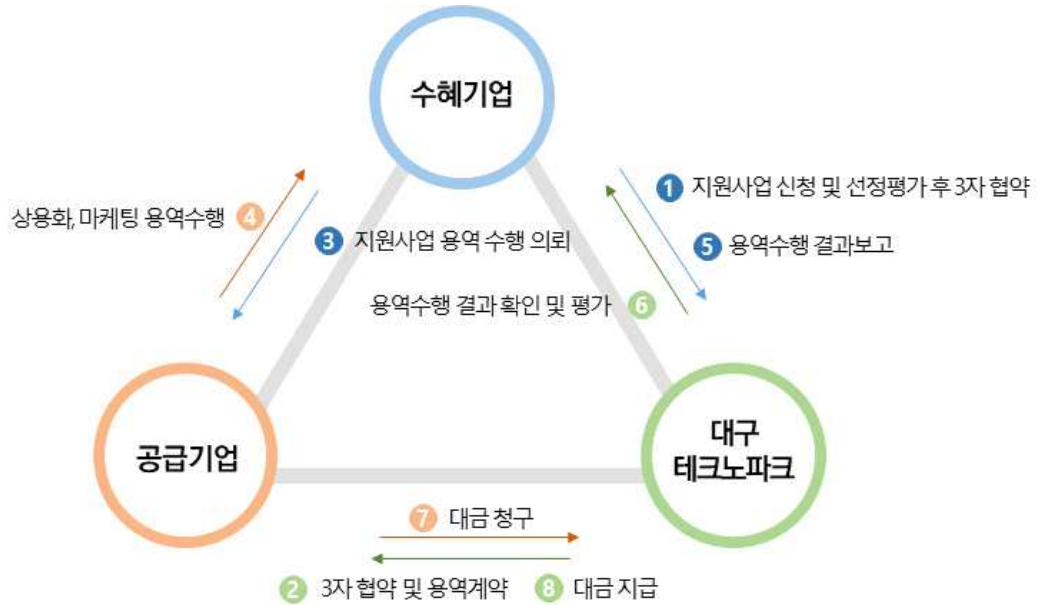
-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를 통한 용역대금 지급
- 신청기업이 견적 및 비교견적을 확인 후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신청
- 실증지원의 경우 수혜기업과 직접 계약을 통한 지원
- 지원항목 복수선택 가능(단 지원금액은 각 지원분야 내에서만 사용가능)
- 지원항목 내 단일프로그램 지원 또는 지원항목별 단일프로그램으로 패키지 지원 신청 가능

| 구분 | 예 시 |
|-------------|---|
| 지원가능 | ③ 마케팅지원(00용역 1건) 또는 ② 실증 지원(00용역 1건) |
| | ② 실증 지원(00용역 1건) 및 ① 상용화 지원(00용역 1건) ② 실증 지원(00용역 1건) 및 ③ 마케팅지원(00용역 1건) ③ 마케팅지원(00용역 1건) 및 ① 상용화 지원(00용역 1건) |
| | ① 상용화 지원(00용역 1건) 및 ② 실증 지원(00용역 1건) 및 ③ 마케팅지원(00용역 1건) |
| 지원불가 | ① 상용화 지원(00용역 2건 이상) 또는 ② 마케팅지원(00용역 2건 이상) 또는 ③ 실증 지원(00용역 2건) 중 하나라도 다수 용역인 경우 |
| | ① 상용화 지원이 필수인 상황(프로토타입 제작 지원)이지만 패키지로 신청하여 탈락될 경우 ② 실증 지원 및 ③ 마케팅지원은 지원불가 |

3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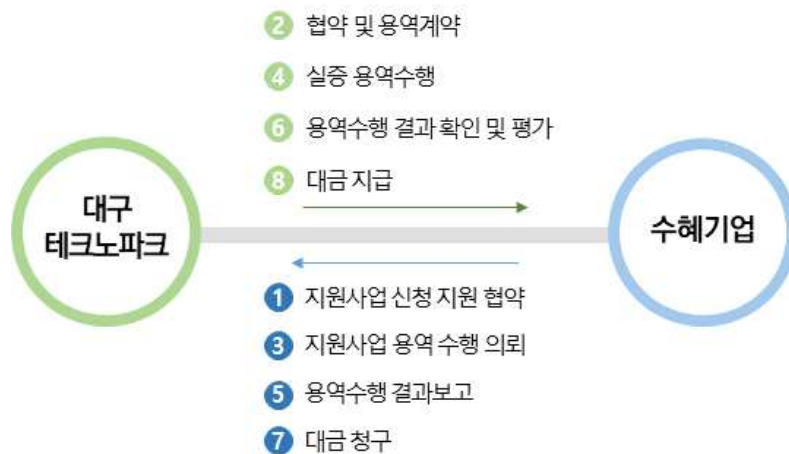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방식

- 상용화지원, 마케팅지원 :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심사 후 공급기업에 대금지급



- ※ 수혜기업 :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/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
- ※ 공급기업 : 상용화 지원, 마케팅 지원 범위 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인사업자 및 기관

- 실증지원 :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심사 후 수혜기업에 대금지급



- ※ 수혜기업 :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/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
- ※ 실증지원은 지원기관과 수혜기업 간 계약을 통한 지원

○ 지원절차 및 일정

| 구분 | 추진내용 및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공고 및 접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월 초 ~ 7월 초(1개월 간)</p> |
| ↓ | |
|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혜기업, 공급기업 선정 ■ 수혜기업과 협약 체결 및 공급기업과 용역 계약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월 초 ~ 7월 말</p> |
| ↓ | |
| 사업수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수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월 초 ~ 10월 말 (3개월 간)</p> |
| ↓ | |
| 최종결과 보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급기업 : 용역결과 보고 ■ 수혜기업 : 최종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월 말 ~ 11월 초</p> |
| ↓ | |
| 최종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 결과 평가 ■ 최종 결과 평가에 따라 지원금(용역대금)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월 초 ~ 11월 말</p> |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선정 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선정방법

-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(1.2배수 모집 미달 시 생략) 및 2차 발표평가(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)진행
- 발표평가 대상 여부 및 일정은 별도 안내
- 발표는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’,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불가’
 - ※ 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 순에 따라 우선 지원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됨

○ 평가기준

-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검토, 기술성, 사업성, 지원 효과성, 공급기업 역량 등 선정(발표)평가

| 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술성 (30점) | - 기존 기술(서비스)과의 차별성, 활용 가능성 | 15 |
| | - 공급기업의 역량(관련 분야 추진 실적 등) | 15 |
| 사업성 (30점) | - 확산 및 보급화 가능성 | 15 |
| | -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| 15 |
| 적정성 및 효과성 (40점) | - 도입기술의 성숙도 및 구현가능성 | 20 |
| | -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(예상 매출 및 고용 등) | 20 |
| 평가점수 합계 | | 100 |

○ 선정결과 안내

- 신청서 내 기재한 이메일을 통한 평가결과 개별안내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6년 6월 9일 ~ 7월 8일(1개월)

○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양식 | 제출형식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1 | 사업계획서 | HWP, PDF | 각 1부 |
| 2 | 발표자료 | PPT 또는 PDF | |
| 3 | 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 | PDF | |
| 4 |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| | |
| 5 |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 | | |
| 6 | 사업자등록증 | | |
| 7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| | |
| 8 | 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개년) | | |
| 9 | 공급기업 견적서 | 실증지원은 마해당 | |
| 10 | 비교견적서 | | |
| 11 | 과업지시서 | HWP | |

○ 제출방법 : <https://dpis.or.kr/> (우편 및 이메일 신청 불가)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문 의 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담당자 : 임영호 선임연구원 · 연락처 : 053-795-9766 · E-mail : iyh@dgtp.or.kr |
|--------------|--|

6 제출 전 확인사항(제출불가 해당여부)

○ 필수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여부

- 의무사항 불이행 :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참여 제한 :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상태인 경우
- 세금 체납/신용 불량 :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
- 정부사업 성과조사 불이행 :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

○ 재무 상태 확인

- 부채 비율 과다 :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
- 자본 잠식 :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

○ 중복 지원 및 과제 유사성 여부

- 중복 수혜 : 최근 3년간('23년~현재)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정부·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
- 기 개발/유사 중복 : 신청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,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
- 기타 공공기관 지원 : 정부·지자체·기타 공공기관 지원과제에 기 선정 되어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우

○ 서류 및 절차 확인

- 필수 서류 누락 : 신청자 부주의로 인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
- 제출 서류 미비 : 제출 서류(신청서 등)가 미비한 기업
- 허위 사실 : 제출 서류 및 추진 과정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(사업 취소,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가능)
- 기타 부적정 사유 :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공급기업 기준 해당여부

- 국외 법인, 개인사업자, 자산성 물품구매, 구매대행 여부
 - ※ 공급기업 : 국내 중소·벤처기업 법인사업자 및 전문연구기관(역량을 보유한 대학, 연구소, 비영리기관 등)